

## 공안문제연구소와 국회의 역할

문성호 (한국자치경찰연구소 소장)

우리나라 경찰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제도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일본이 한반도 식민지 지배를 위해 운영하다가 정작 일본마저도 포기한 단일의 강력한 국가경찰제도를 해방 후 60년이 다 지나도록 고수하고 있다든지,

고졸자를 4년 동안 병역 등 온갖 특혜를 주어가며 경찰대학에서 교육시켜 졸업후 곧바로 간부계급에 임용한다든지, 경찰의 내부 여론을 집약할 통로 역할을 하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경찰협의회나 경찰노조 등을 일체 불허한다든지, 같은 준사법기관이면서도 '검찰의 노예'로서 수사권 행사에서 철저한 제약을 받도록 하고 있다든지, 경찰 아닌 군인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경찰에 들어온 전의경들로 하여금 동료 젊은이과 노동자의 집회와 시위를 막도록 내몬다든지 하는 것들이 그 일부 사례들이다.

우리나라 경찰이 공안문제연구소라는 사상감정서 대량생산기관이라는 제도를 통해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옥죄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사회과학 및 사상의 발달을 저해토록 한 것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경찰제도 품목에서 예외가 아니다.

## 1. 국회논의

1994년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당시 야당이 이를 문제로 삼기 시작하여 그 근거와 예산실태를 따진 바 있다. 당시까지 엉뚱하게도 서울시 예산으로 존립해오던 공안문제연구소는 다음해에 이르기까지 내무부와 경찰청 및 서울시 국정감사를 통해 당시 야당측의 끈질긴 추궁으로 인해 서울시에서 경찰 자체 예산으로 바로잡히게 되었다.

이후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국정원(당시 안기부)이 1993년 이후 안기부법 개정을 통해 국회 정보위 통제를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수행하는 정보보안 기능 및 공안문제연구소 업무에 대해서는 행자위(당시 내무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태나 문제점들이 현재에 이르러서도 제대로 다루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더불어 공안문제연구소가 소멸될 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일반 수사상 감정과 증거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국과수에 대해 국정감사를 벌이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국회에서 이 공안문제연구소 제대로 통제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위원회 스스로 제도화함으로써, 그 악용 가능성을 감시토록 해야 한다.



## 2. 누가 사상감정서를 발급하는가

기본적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동시에 공안문제연구소도 폐지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았으면서도, 그 적용이 신중하거나 사건수가 줄었다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여 공안문제연구소 인력 및 사상감정 원칙에 대해서도 재조정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경검의 고문수사와 유사하게, 그동안 공안문제연구소 측이 경검 및 국정원과 짜맞추기 수사를 위해 사상감정서도 짜맞추어 생산한 전례가 허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한때 탈북인사가 공안문제연구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은 바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논의되고 특수성을 가진 사상들을 북한 사상의 잣대로 심판하고 처벌하고 마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뜻한다. 훗날 사상사가들은 박정희의 새마을운동이나 유신체제론보다 오히려 현대의 진보적 사상이야말로 역설적으로 현대 한반도에서 창조된 가장 독창적이며 걸출한 한국사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자유로운 사상체계의 창조발전을 가로막은 주범들 중 하나로 국가보안법과 함께 바로 이 공안문제연구소를 지목할 가능성이 크다.

한걸음 더 나아가 일반 대학 석박사 수준의 연구원들이 중견 학자의 이론을 재단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도 이런 사상감정서를 대량 생산토록 한 것은 어불성설이다.

### 3. 향후 대안과 관련하여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에 있어서 그 폐지 권한을 가진 국회가 거꾸로 가장 거대한 보안수사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찰 및 공안문제연구소의 잘못된 국가보안법 고수 자세를 제대로 추궁하고 제어해내지 못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개개 행정자치위원들이 직무유기하고 있다는 지탄을 받게 만들 우려가 크다.

경찰이 국정원이나 검찰보다 훨씬 많은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수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간첩조작을 비롯하여 수많은 국가보안법 위반사범들을 양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측이 과거사 청산을 위해 다룰 게 별로 없다고 발뺌하고 있는 것을 국회가 마냥 방치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거꾸로 전현직 공안문제연구소 연구원들 측에서도 이제는 과거에 저질렀던 께맏추기식 사상감정이나 그 결과 초래된 엄청난 인권침해 등에 대한 구체적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그런데 거꾸로 공안문제연구소 일부 연구원들은 오히려 직장의 보전이나 구직을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를 외치고 있다. 이것은 과거 민주화운동이나, 학문과 사상의 자유로운 활동들에 대한 최근의 재평가 추세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로 인해 공안문제연구소 연구원들의 실업문제가 대두한다면 이것은 국가보안법 고수나 공안문제연구소 온존 차원이 아닌, '취업을 위한 재교육' 차원에서 풀어나야 할 일이며 경찰 아닌 노동부나 교육부 등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